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라 통합·수정된 국가기술자격명칭을 반영하여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3)까지 기술인력란 및 나목 기술인력란 중 “기계정비산업기사”를 “설비보전산업기사”로 한다.

4.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의4 제1호나목2)가) 중 “생물공학”을 “바이오화학제품제조”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2)나) 중 “일반기계, 기계설계”를 “일반기계”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3)나) 중 “기계가공조립”을 “기계조립”으로, “기계정비”를 “설비보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까지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로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

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022